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예술진흥과 활동지원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해 소질개발과 교양증진 등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 분야에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칭 및 위치 (조례 제2조)

- 명 칭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산49-1번지

나. 기능 (조례 제3조)

-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

다. 개관 및 휴관 (조례 제5조)

- 개 관 :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원칙, 필요시 연장·단축
- 휴 관 :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 필요시 개관
- 개관제한 : 개관제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지체없이 공고)

라. 사용시간 (조례 제6조)

- 1회 사용시간
 - 공연장 및 소강당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전시일은 1일, 도서관은 4월~10월, 11월~익년 3월로 사용시간을 구분

마. 사용허가 (조례 제7조)

- 문화센터 시설 전부 및 일부 사용 시, 사용예정 15일전에 사용신청
-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시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바.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조례 제8조)

- 사용허가 제한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구청장이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사용 입장제한
 -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알콜중독자
 - 타인에게 위해 소지가 있거나 방해가 될 물품 소지한 자
 - 기타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 사용료 (조례 9조)

-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아.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

자. 위탁운영 (조례 제16조)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 보조 및 구유재산 무상 대여

3. 검토의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구청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산49-1번지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과 민방위교육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문화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진흥과 활동지원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해 소질개발과 교양증진 등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분야에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조례 제3조), 개관 및 휴관 (조례 제5조), 사용시간(조례 제6조), 사용허가(조례 제7조),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사용료(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조례 제10조), 위탁운영(조례 제16조)에 관한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조의 제목을 바꾸든지 조문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며, 배열순서도 조례규율 순서에 따라 문예회관(제3장), 청소년수련관(제4장), 공공도서관(제5장), 민방위교육장(제6장)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기관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 제1항 2호,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 3호, 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4호,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5호, 도서자료의 관외대출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제1항 4호 등에서 그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5조에서 문화센터는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 시설별 사용시간과 맞지 않아 문화센터 기능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사용료의 반환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문화센터의 사정,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이 있어야 하지만,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제11조 2호 100/50은 50/100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용자의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제2항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나 설비를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설치에 사용자의 원할 때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¹⁾ 또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4항), 대집행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입법적 불비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²⁾

여섯째, 제14조에서는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의

1)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도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12조 제4항에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정하여 예시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시하였으면 합니다.

일곱째, 제21조 각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문예회관의 업무 중 5호는 4호와 내용상 중복되기 때문에 4호로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대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단체 및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공공도서관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제1호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의 내용과 동일하고, 동법의 내용이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고,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서도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열 번째, 조례안 제33조에서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상호 교환 및 이관과 오손되었거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폐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시 참작해야 할 기준 등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열한 번째, 제6조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조례체계상 「별표」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제9조의 규율방식과도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9조는 규율내용이 한가지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